발송번호: 9-5-2013-016923236

발송일자: 2013.03.12

YOUR INVENTION PARTNER

^{특 허 청} 특허거절결정서



출 원 인 성 명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 (출원인코드: 220060278499) 주 소

대 리 인 성 명 윤여강 외 2 명

주 소

출 원 번 호 10-2011-0010764

발 명 의 명 칭 탄소나노튜브 섬유제조

지정기간 2013.02.28 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이 없었으며, 다시 심사한바 2012.10.30 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결정합니다. 끝.

2013.03.12

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

섬유생활용품심사과 심사관 최봉돈 _____

<< 안내 >>

- 1. 출원인은 이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심판 청구기간)에 보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보정 없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심판 청구기간에는 분할출원도 할 수 있습니다. 재심사 청구시에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심판 청구기간은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심판 청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법정기간 연장신청서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)를 특허심판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명세서 등의 보정은 반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해야 합니다.
- ※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☎ 042-481-8166(담당심사관 최봉돈)로,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우 302-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